	규정	문서번호	TWP-C101	
		제정일자	2008. 04. 10.	
	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위원회
- 부칙

작성부서	교수학습지원센터	제정일자	2008. 04. 10.
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교수학습 지원센터장	사무처장	기획홍보처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교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
규정

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

문서번호	TWP-C101
제정일자	2008. 04. 10.
개정일자	2017. 12. 18.
개정번호	8
페이지	2/4

개정이력
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- 1차 개정
2	2012. 07. 27.	-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을 직업교육개발센터 규정으로 개정
3	2013. 10. 22.	- 부서 명칭변경(직업교육개발센터→직무능력교육개발센터)
4	2014. 04. 10.	- NCS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개발위원회, 평가위원회 구성
5	2014. 12. 22.	- 부서 명칭변경(직무능력교육개발센터→교수학습지원센터) - NCS 관련 규정 삭제 및 수정
6	2016. 10. 13.	- 교수학습지원센터 위원회 강화(자문위원회, 기초학습능력 향상 책임지도위원회) -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 명확화 - 규정 문구 재정립
7	2017. 01. 26.	-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비스러닝팀 조직
8	2017. 12. 18.	- 센터장, 조직 및 직원 사항 보완 - 운영세칙 관련 사항 보완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1
		제정일자	2008. 04. 10.
	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
		개정번호	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.

- ①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
- ② 교수법 특강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업무
- ③ 교수법 연수 참가 지원에 관한 업무
- ④ 교수법 관련 매체 지원에 관한 업무
- ⑤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
- ⑥ 학습법 특강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업무
- ⑦ 학습 관련 스터디 그룹, 튜터링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
- ⑧ 교수법 및 학습법 관련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지원
- ⑨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
- ⑩ 교수법 평가 및 시상에 관한사항
- ⑪ 서비스러닝 활동 지원 업무<신설 2017.01.26.>
- ⑫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[중전 제2조의 ⑩항은 제2조의 ⑫항으로 이동<2017.01.26.>]

[중전 제2조의 ⑪항은 제2조의 ⑩항으로 이동<2017.01.26.>]
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7.12.18.>

② 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12.18.>

제4조(직원) 센터에는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7.01.26., 2017.12.18.>

제5조(업무) 직원은 본 센터의 교수지원, 학습지원, 이러닝 지원, 서비스러닝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<신설 2017.12.18.>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1	
		제정일자	2008. 04. 10.	
	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7. 01. 26.	
		개정번호	7	페이지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위원회)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”), 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”), 기초학습능력 향상 책임지도위원회(이하 “기초위”)를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.

- ① 운영위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8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② 자문위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받기 위한 목적으로 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기초위는 재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책임지도위원을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,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된다.

[중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<2017.12.18.>]

제7조(운영세칙) 이 외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8.>

[중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<2017.12.18.>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